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5다781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5다7819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4나5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1.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피고, 피상고인2. D

판결 선고 2019. 7. 4.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창원)2014나53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N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1) E과 피고 B는 2004. 3.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하여 그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1:1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 2) E과 피고 B는 2006. 12. 5. 먼저 완공된 전원주택 1동과 AD 소유의 N 호텔을 교환하였고, 2008. 6. 30.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 등에 이용하였는데, 위 호텔 및 전원주택 수익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1. 초순경 이 사건 사업부지, 전원주택 및 위 호텔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 3) E과 피고 B는 Q에게 전원주택의 분양대행 및 이 사건 사업의 이익 배분 업무(이하 '이 사건 분양 및 정산업무'라 한다)를 위임하였고, Q은 피고 D과 분양업무를 같이 하였다.
- 4) E과 피고 B는 2011. 4. 내지 5.경 전원주택 분양이 마무리 되자 E이 위 호텔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피고 B가 전원주택 1동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나누기로 한 후 2011. 5. 26. 위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
- 5) 원고는 분양수입금 2,354,000,000원으로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대출금 등을 변제한 후 2011. 4. 29.부터 2011. 6. 1.까지 업무용 계좌 등을 통해 Q과 피고 D에게 824,810,253원을 송금하였다. Q과 피고 D은 위 824,810,253원 중 660,000,000원을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144,810,253원을 자신들이 가졌다.
- 6)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체는 E과 피고 B였으나, 실질적으로 E을 대신하는 원고를 이 사건 동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2011. 5.경 Q의 정산안에 따라 부동산과 현금을 나누기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① Q이 E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위 824,810,253원 중 66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1. 5.경에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정산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E과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 완료의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E이 동등한 출자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동업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수익금 배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① E과 피고 B가 동등한 금전 출자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② E은 이 사건 사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노무를 출자한 점, ③ 피고 B는 2011. 5.경 이후 수익금 배분 비율을 1:1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피고 B와 동등한 정도의 금전 출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둘 사이의 수익금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의 이익분배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제5점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수입·지출현황,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 전체의 수입을 7,497,926,797원, 지출을 5,348,202,164원으로 산정하되, Q과 피고 D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분양 및 정산업무 수수료는 수익금 정산을 위해 불가결한 항목임에도 원고와 피고 B가 그 구체적인 금액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므로, 위 824,810,253원 중 원고와 피고 B 모두 Q과 피고 D이 보유하는 데에 이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144,810,253원을 이 사건 분양 및 정산업무 수수료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수입 및 지출이나 위 수수료 산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N 호텔의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E이 부담하게 되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사업 정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호텔은 E이 보유하는 것으로 배분되었고 그 임대수입도 E이 수령하게 되어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위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사업 정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 D이 이 사건 분양 및 정산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E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을 피고 B에게 배분하여 E에게 손해를 입히는 동시에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164,810,253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분양 및 정산업무는 Q이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피고 D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도 피고 D이 수익분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② 피고 D이 이 사건 분양 및 정산업무 수수료 144,810,253원을 넘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